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8439호, 2021. 8. 17. 공포, 2022. 2. 18. 시행)에 따라,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(안 제53조의2)
- 나.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(안 제53조의3)
- 다.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(안 제55조의2)
- 라.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(안 제60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생계지원금)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분할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생활조정수당”은 “생계지원금”으로, “국가유공자”는 “5·18민주유공자”로 본다.

제53조의3(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

여야 한다.

②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③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수급권 확인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·질문 등의 권한,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생활조정수당”은 “생계지원금”으로 본다.

④ 법 제89조의2제5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, 권리의 보호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의2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보훈급여금” 및 “생활조정수당”은 “생계지원금”으로 본다.

제55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

제60조제1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은행에”를 “은행에 위탁하고,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”로 한다.

39의2. 법 제89조의2,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, 제17조의2 및

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급,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·질문,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신청의 촉진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53조의2(생계지원금)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家口) 가계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분할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생활조정수당”은 “생계지원금”으로, “국가유공자”는 “5·18민주유공자”로 본다.
<신설>	제53조의3(생계지원금의 신청 방

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③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수급권 확인·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·질문 등의 권한,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생활조정수당”은 “생계지원금”으로 본다.

④ 법 제89조의2제5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, 권리의 보호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